

- 약관명 :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 (징구용) (5-06-0587)
- 시행예정일: 2023.04.18. (예정)
-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: 적용
- 개정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조(목적) ~ 제16조 (접근수단의 관리) <생략></p> <p>제17조(약관의 변경)</p> <p><u>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간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리기로 합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 합니다. 다만,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<u>③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u></p> <p><신설></p>	<p>제1조(목적) ~ 제16조 (접근수단의 관리) <좌동></p> <p>제17조(약관의 변경)</p> <p><삭제></p> <p><u>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)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이의</u></p>	<p>문구 정비 및 약관변경승인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통지 신설</p>

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
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
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
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“이용
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
시행일 전의 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
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
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
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약관의 변경내용
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
것으로 봅니다.